



대진대학교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학생 임상실습 협약서



대진대학교(이하 “학교”)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하 “병원”)은 대진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효율적인 실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임상실습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학교와 병원간의 협력을 통해 간호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숙련도를 높이고 포괄적인 간호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훌륭한 간호사를 양성함과 더불어 학교와 병원간의 상호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 내용)

1. 학교는 효율적인 실습과 병원 방침의 준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가. 학교는 실습생이 병원의 방침과 규정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
 - 나. 학교는 실습기간 중 실습담당 지도교수를 파견하여 실습 및 집담회를 지도한다.
 - 다. 실습지도와 운영에 관하여 실습 전, 후에 병원 담당자와 실습 협의를 갖는다.
 - 라. 실습에 관련된 제반 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
 - 마. 실습기간에 발행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병원이 책임지지 않는다.
2. 병원은 효율적인 학생실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과 협력을 제공한다.
 - 가. 병원은 학생의 실습을 위해 필요한 장소와 물품사용을 허용하며 학생의 실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한다.
 - 나. 병원은 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하며 학생의 실습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학교에 통보한다.
 - 다. 병원은 실습생이 지켜야하는 병원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학교와 사전 협의하며 전체 모든 개인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조 (협조 및 의무사항)

1. 학교와 병원은 협약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며, 적극 협조한다.
2. 실습인원, 기간 및 실습부서에 대한 학교의 실습요청에 대해 병원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병원의 조건 변경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제4조 (협약기간,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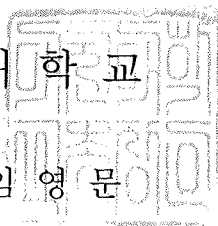
1.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본 협약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하며, 필요시 별도협의로 정한다.
3.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후 1부씩 보관한다.

2023. 03. 01



대진대학교

총장 임영문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 한창희

